성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사무 위임, 기증품 취득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과에는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고 실·과내의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는 없었으나, 법령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각 실·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받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기증품 취득시에는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 11조)

3. 개 정 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05.8.4 법률7665호) 및 동법시행령(공포 '05.12.30 대통령령 제19227호)」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물품관리조례"를 "성주군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27조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을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에게"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로 하고, 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1 ○품종구분 기준 (1) 비품의 ②를 삭제하고, (2) 소모품의 ④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비례"를 "비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관리책임) ①~② (생 략)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함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생 략) 〈신 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직무을 정하기 위함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함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② (현행과 같음)	○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생략)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 ② (현행과 같음) 〈삭제〉	○ 용어정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삭 제〉	○ 영 제61조에서 정수물품임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생 략) (2) (생 략)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생 략)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생 략) (2) 소모품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10만원..... ...비례하여.....	